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476호 2021. 6. 10.(목)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1-1105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2
고성군 공고	제2021-1106호 고성군 공설장사서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1

고 시

회					
람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1-1105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 입법예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용어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부담을 완하하고 조문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 사용허가 등의 용어를 사용신고로 정비
- 무연고시신 안치기간 변경에 따른 기간정비
- 나. 장사시설 감면대상자 용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복지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 담당자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2) 전화: (055)670-2603, 팩스: (055)670-26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 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 [전화: (055)670-260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 및 신고 등)"을 "(사용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나 신고를"을 "사용신고 등을"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4항 중 "부부중"을 "부부 중"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허가기간)"을 "(사용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연분묘 및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을 "무연분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연고 시신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장묘시설"을 "공설묘지"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제9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 및 소멸)"을 "(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을 "사용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연장사용허가를 받지 않은"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으로 한 다.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신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범위

법률명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 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 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 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 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 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 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및 신고 등) 장사시설을	제4조(사용신고 등)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에게 <u>사용허가나</u>	사용신고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자 범위) ① ~ ③ (생 략)	제5조(사용자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
	<u></u> 수
④ 공설묘지의 사용은 <u>부부중</u> 한 사	④ <u>부부 중</u>
람 사망 시 생존자가 70세 이상인 경	
우 매장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	제6조(사용기간 등) ①
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u>무연분묘</u>	<u>무연분묘는</u>
및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후단 신설〉	연고 시신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
	<u>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사시	
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	
다.	
1. 전액감면	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u>따른 의료급여 수급자</u>
나 「구가유곤자 두 예우 및 지원	나 「구가보호 기보법」에 따르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대상 자와 그 배우자

라. · 마. (생 략)

- 2. 50퍼센트 감면
 - 가. 장묘시설 소재지 법정리 주민 (주민등록 거주자)

② (생 략)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소멸) ① 군 제9조(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①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 다.
- 1. (생 략)
- 2. 사용기간 경과 후 연장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 칙 부칙

제3조(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조례의 규정 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희생 · 공헌자와 그 배우자.

〈삭 제〉

라.·마. (현행과 같음)

2 -----

가. 공설묘지 -----

② (현행과 같음)

----- 사용권을 -----

- 1. · 2. (현행과 같음)
- (2) -----

- 1. (현행과 같음)
- 2. -----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

부 칙 부칙

----- 사용권을 득-----

----- 사용권을 받-----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최 혜 숙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 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공설장사시설 정조례안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E /	04916						
○ 성명(단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	(찬 • 반	의견과 그 이	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11/8 단	찬성	반대	T/8 T	778717	

고성군공고 제2021-1106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 입법예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용어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부담을 완하하고 조문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등의 용어를 사용신고로 정비

나. 서식 등의 정비를 통해 용어를 통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복지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 담당자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2) 전화: (055)670-2603, 팩스: (055)670-26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 [전화: (055)670-260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 호 중 "(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기간연장)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증"을 "신고필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허가증"을 "신고필증"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u>(사용허가 신청)</u> ① 「고성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2조(사용신고 신청) 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장사시설 사용 <u>(기간연장)허가신청</u> <u>서</u> : 별지 제1호서식	1(<u>기간연장)신청서</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u>허가</u> <u>증</u>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u>신고필증</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 ① (생 략)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봉안당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②
인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u>사용허가증</u>	<u>신고필증</u>
을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	
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현행]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망장소		
	사망	일자	사망원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 (사용자)	주	소			
	전화	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보 제476호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자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자 (사용자)	주 소					
(, 5 , ,	전화번호 사망자와 의 관 계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型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자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자 (사용자)	주 소					
,	전화번호 사망자와 의 관 계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型

* 신청자 주소변경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봉안유골 위치 변경 신청서					
	7].	존 봉안유골	이후 봉안신청유골		
N =0 =0	성 명		성 명		
사 망 자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봉 안 번 호		봉 안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용 자 또 는 연 고 자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위치변경	당초 봉안번호 : ⇒ 변경 봉안번호 :				
사용기간	사용기간 봉안사용허가 잔여기간으로 함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봉안유 골 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약)자 :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 생년월일	
	봉안번호	허가일자	
	허가기간		
사용허가	사용일수	사 용 료 납 부 금 액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관계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사용자와관계	
신청금액	일금	원 (원)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

지참서류 : 1. 주민등록증

2. 통장사본

[별지 제6호서식]

			유	골	인	도	신	. え	3	서	
사 망 자	성	명	()		생 년	1월	일	
	봉안	번호						허 기	- 일	사	
	허가:	기간					·				
사용허가	봉안'	일자						사 납 투	용 L 급	료 - 액	
	사용자	성명						생 년	1 월	일	
		주소						사망기			
	성	명						생 년	9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이용>	<u> </u>	관계	
개장사유		사유									
개장사항	개장장소										
	개장'	일자									
	비	고									

유	골	인	수	증

	○ 사 망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봉안번호 :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 주소 성명 (인)

유골인계공무원 (인)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개정]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망장소						
	사망	일자	사망원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 (사용자)	주	소							
	전화	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보 제476호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자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자 (사용자)	주 소
,	전화번호 사망자와 의 관 계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型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필증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자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자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 의 관 계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

※ 신청자 주소변경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봉안유골 위치 변경 신청서								
	7]	존 봉안유골	이후 봉안신청유골					
N =1 =1	성 명		성 명					
사 망 자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봉 안 번 호		봉 안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용자 또 는 연고자	주 소							
원고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위치변경	당초 봉안번	당초 봉안번호 : ⇒ 변경 봉안번호 :						
사용기간	봉안사용신.	고 잔여기간으로 함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봉안유 골 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약)자 :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21년 6월 10일(목)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 생년월일
	봉안번호	신 고 일 자
	사용기간	
사용신고	사용일수	사 용 료 납 부 금 액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관계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사용자와관계
신청금액	일금	원 (원)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지참서류 : 1. 주민등록증

2. 통장사본

[별지 제6호서식]

			유	골	인	도	신	청	入	1		
사 망 자	성	명	()	7	생 년	월	일		
	봉안		`			,	Ž	신 고	일 :	자		
	사용	기간										
사용신고	봉안'	일자					ļ	함 부	용 금	료 액		
	사용자	성명					7	생 년	월	일		
		주소)	나망지		계		
	성	명					/	생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번호					(이용자	와관.	계		
개장사항	개장	사유										
	개장	장소										
	개장'	일자										
	비	고										

Ò	고	٥ì	入	ス
TT	三	ŭ	T	ত

○ 사 망 자 : 성명 ○ 생년월일 :

○ 봉안번호 :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 주소

성명

(인)

유골인계공무원

(인)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최 혜 숙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 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칙 일부개정조	례안					
○ 성명(단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	(찬 • 반	의견과 그 이	유)					

개정안	찬반	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11/8 단	찬성	반대	T/8 T	T787FTT

고성군 고시 제2021-170호

지형도면 고시(고성 202호선:율대~매수간 도로)

농어촌도로 고성 202호선(율대~매수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의 노선지정에 따른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기반시설: 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 2021. 6. 8. 고 성 군 수

- 지형도면 고시 사항
- 1.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러조}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3	120	7	국지 도로	322	고성읍 율대리 406-2	고성읍 율대리 525-2	일반 도로	_	-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도로명	도로명	성 결정 내용 결정 사표 			
			O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일원의 율대~매수간		
	소로3-120	O 노선 신설	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통		
_		는로3-120 - 연장 322m, 폭원 7m	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의 재산보호와 도로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		
			기 위해 군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자 함.		

2.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 생략

고성군 고시 제2021-172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10.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7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하이면 덕명리 754	하이면 덕명1길 41	2021.06.10.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 덕명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2	고성읍 송학리 244-38	고성읍 송학로 178	2021.06.10.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고성읍 송학리)을 이용하여 송학로로 명명	
3	고성읍 이당리 295-7	고성읍 이당2길 7	2021.06.10.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고성읍 이당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4	상리면 척번정리 786	상리면 척번정1길 50	2021.06.10.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상리면 척번정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5	회화면 어신리 10-2	회화면 어신3길 20-42	2021.06.10.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회화면 어신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